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년 4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19(월) 이만재 의원의 2인
- 나. 회부일자 : 2004년 4. 28(금)
- 다. 상정일자 :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4. 28)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2003.7.18, 법률 제6927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3.12.18, 대통령령 제18161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월 55만원씩 지급되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
- 상위법의 개정 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구자치구의원에게도 월 20만원씩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도 상향조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동법시행령(2003. 12. 18)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월 55만원씩 지급되던 의정자료·연구비를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금까지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규정중 숙박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원 안		개정안	
구 분	숙박비(1야당)	구분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151	의장 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09		나등급 120
	다등급 84		다등급 92
	라등급 7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32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86		나등급 95
	다등급 64		다등급 70
	라등급 56		라등급 6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